

###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보정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3년 12월 0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성명 | 성명<br>생년월일        | 최종신고 주소             | 신고사항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정**   | 김**<br>2013-02-16 |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51번길 | 재등록  |
| 정**   | 김**<br>1978-04-12 |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51번길 | 재등록  |
| 정**   | 정**<br>1982-06-02 |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51번길 | 재등록 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 담당자 : 박지혜      문의전화 : 031-324-6764 )

2023년 11월 23일

